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3. 5.  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2월 15일

나. 발 의 자 : 박미영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3. 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

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)
-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3항)
-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2)
-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3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
  -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2014. 1. 28.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토록 하였으며,
  -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,
  -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「아동복지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과 「아동복지

법」의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2월 일

발의자 : 박미영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범  
죄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,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  
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 
강화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
특례법」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제1항 및 제  
2항)
- 나.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3항)
- 다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2)
- 라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3)

#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2. 14. ~ 2. 19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때에는 법 제25조”를 “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25조제2항”을 “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”으로, “때”를 “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교육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의3(홍보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 매체, 캠페인,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-- ----- <u>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1항--.</u></p> <p>② <u>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---</u> ----- <u>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-----</u> -----.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제9조의2(교육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의3(홍보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, 캠페인,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